

부산광역시 사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128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2008. 10. 8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사유

「교통안전법」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교통안전정책의 추진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 시·도에서만 구성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사·구(군) 모두 구성토록 법률이 개정(2008.1.1.시행)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 기능(안 제2조)
-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(안 제3조)
-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(안 제4부터 제10조까지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교통안전법」 제13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입법예고기간 : 2008. 8. 20 ~ 9. 9 ▷ 제출된 의견 없음

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

부산광역시 사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교통안전법」 제1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과 실행계획
2.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개선지역 확정
3. 각 기관의 주요 교통안전시책 결정 및 추진상황 확인
4.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대책
5. 대형 교통사고 감소대책 및 안전교육·홍보계획 등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되고,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도시국장, 기획감사실장, 교통행정과장, 건설과장
2. 사하경찰서 경비교통과장
3. 사하소방서 재난대응과장
4. 서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
5.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·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

제4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단, 공무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
2. 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위원으로서 부적정하다고 인정한 경우
3.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
제7조(간사)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업무 담당주사가 된다.

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.

1.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의사일정, 안건 통보
2. 위원회의 회의 시 회의록 작성 및 보관
3.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

제8조(회의) ① 회의는 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자료 제출 등) 위원장은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단체 및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교통안전 업무 수행 상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10조(수당 등)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